



강 남 구 의 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안내**

1. 감사담당관-14108(2015.10.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따라
3. 재산등록 의무자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하여 **의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를** 등록기관(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중 기존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규자, 미동의자 및 추가동의필요자 등은 붙임1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안내”를 참조하여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15.10.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방 법

-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를 수기 작성(자필서명)
-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http://peti.go.kr>) 접속
- 3) 메인화면 메뉴 → 친족관리 → 정보제공동의 클릭
- 4) 직계존·비속 별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 5) 작성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를 **스캔하여 파일첨부**

첨부파일

※ 첨부파일형식은 TIF, JPG, GIF 파일만 가능합니다.(400_DPI_스캔파일) 파일사이즈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 6) 버튼 클릭

- 7) 동의서 원본은 의정팀 재산등록 담당에게 제출

- 붙임 1.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 업무안내 1부
2.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서식 1부. 끝.

강 남 구 의 회 의 장

수신자 김명옥 의장, 이재민 운영위원장, 문인옥 행정재경위원장,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 오완진 의원, 양
승미 의원, 이경옥 의원, 김병호 의원, 송만호 의원, 이재진 의원, 이관수 의원, 한용대 의원, 최민숙
의원, 최중현 의원, 문백한 의원, 이호귀 의원, 김광심 의원, 이인화 의원, 서경원 의원, 여선웅 의원

주무관 윤석호 의정팀장 代이호병 구의회사무국장 10/05 이동호

협조자

시행 강남구의회-10701 () 접수 ()
우 06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 (대치동) /
전화 02-3423-8108 /전송 02-3423-8926 / ys7ho@gangnam.go.kr / 대시민공개